

부속서 8-가 금융 서비스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법인을 말한다.
- 나. **금융 서비스**란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 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 서비스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가) 생명보험, 그리고
 - 나) 손해보험
-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6)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7) 금융리스
- 8)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9) 보증 및 약정
- 10)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가)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나) 외환
 -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 라)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 바) 금·은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11)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자금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14)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5) 그 밖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16)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다. **금융 서비스 공급자**란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 서비스 공급자” 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 **신금융 서비스**란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공급되지 않으나 그 밖의 당사자의 영역에서 공급되고 규제되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현재 및 새로운 생산품과 관련되거나 생산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자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2)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그리고

바.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이나 결제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한 모든 비정부 기관으로, 다음을 말한다.

1) 자율규제기구로 인정되고,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또는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제2조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제8.1조(정의)러호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2. 제8.1조(정의)타호 및 제10.2조(적용범위)제2항다호의 목적상,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¹

나.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 또는

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정부의 보증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활동

¹ 이 호에 언급된 활동은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규제 및 집행 활동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3. 제8.1조(정의)거호와 제10.2조(적용범위)제2항다호에 규정된 정의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제8.11조(현지주재)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부속서와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부속서가 우선한다.

제3조 신금융 서비스

1. 각 유치당사자는 법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지 않고, 동종의 상황에서 그 유치당사자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신금융 서비스를 그 유치당사자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자의 금융기관이 그 유치당사자의 영역에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²

2.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신금융 서비스의 공급은 그 유치당사자의 관련 면허, 제도적 또는 법적 형태, 또는 그 밖의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4조 건전성 조치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신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할 때 새로운 규정 또는 그 밖의 하위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³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제5조 특정 정보의 취급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개인 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조 인정

1. 당사자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자신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때 국제표준제정기구,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⁴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된 국제표준제정기구,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자는,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들 간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상황에서,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

³ 당사자들은 “건전성 사유”가 지급 및 청산 제도의 안전성과 금융 및 운영상 완전성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나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최혜국 대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건전성 조치에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섭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한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밖의 당사자에 제 2항에 언급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7조

투명성

1. 당사자들은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조치가 서로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서로의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금융 서비스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⁵

4.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가. 자신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부속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그러한 규정의 목적을 이해관계인⁶에게 사전에 공표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그러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⁶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이해관계인” 이 그 직접적인 재정상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채택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이라는 그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5.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6.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 이용 가능한 그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⁷
7.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8.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자신의 요건을 다른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9. 신청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0.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다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전한 신청에 대하여 180일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절차가 수행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80일 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1. 신청이 거부된 신청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신청을 거부한 당사자의 규제당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제8조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그러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 예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부속서와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 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들과 비당사자들 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금융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정보의 이전 및 정보의 처리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정보의 이전 및 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⁸
2. 당사자는 다음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가. 자신의 영역에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한 자료 이전을 포함한 정보 이전, 또는
 - 나. 자신의 영역에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처리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규제당국이 규제 또는 건전성 사유로 자신의 영역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 기록 사본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 관리 및 저장, 그리고 시스템 유지와 관련된 자신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다른 규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를 저해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요구는 이 협정상 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4.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성을 보호할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권리는 이 협정상 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5.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비거주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제1조(정의)나호15 목에 언급된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 자료 처리를 본인으로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또는 중개업자로서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당사자가 약속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또는 해외 소비를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자율규제기구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금융기관에 자신의 영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 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자율 규제기구가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자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자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⁹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접근 또는 대우가 자신의 동종 금융기관에 부여되지 않는 경

제12조

협의

1. 당사자는 금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상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른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을 고려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는 제13조(접촉선)에 명시된 접촉선의 관련 대표를 포함한다.

제13조

접촉선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 서비스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 가. 호주의 경우, 재무부 및 외교통상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호주건전성감독청, 호주준비은행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규제 당국의 공무원
 -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브루나이다루살람금융관리국
 - 다. 캄보디아의 경우, 경제재정부, 캄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 캄보디아중앙은행 및 상무부
 - 라. 중국의 경우,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마.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역부, 재무부,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및 인도네시아은행

우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자의 금융기관에 그러한 접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바. 일본의 경우, 외무성, 금융청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행, 재무부 및 라오스증권위원회

자.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국립은행 및 말레이시아증권위원회

차. 미얀마의 경우, 기획재정산업부, 미얀마중앙은행, 미얀마증권거래위원회 및 상무부

카. 뉴질랜드의 경우,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과 조율하여, 외교통상부

타. 필리핀의 경우, 재무부, 필리핀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및 보험위원회

파.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

하. 태국의 경우, 재무부, 태국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및 보험위원회, 그리고

거. 베트남의 경우, 산업통상부, 베트남중앙은행 및 재무부

2. 당사자는 자신의 접촉선에 대한 모든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14조

분쟁해결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 사안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다.